

참고 1

코로나 관련 실습생 상황별 격리기간 및 출근 기준

- ☞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6판 수정판) 기준 안내의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기준을 실습생 실습학교 출근 기준으로 적용('22.3.14. 기준)
- ☞ 이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한 사항임

구분	방역당국 통보	나의 접종상황*	격리기간**	검사	등교기준
“내가”	확진자인 경우 ^①	접종완료자, 미완료자	7일 격리	-	등교 중지
	밀접접촉자인 경우 ^②	접종완료자	수동감시(7일)	접촉자 분류 직후 및 6~7일차 PCR 검사	등교 가능
		미완료자	7일 격리		등교 중지
나의 “동거인이”	확진자인 경우 ^③ (재택치료자)	접종완료자, 미완료자	수동감시(7일)	3일내 PCR 검사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	등교 가능
	밀접접촉자인 경우 ^④	접종완료자, 미완료자	격리기간 없음	격리 지정일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	등교 가능

* (접종완료자 기준)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~90일인 자(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)

** (격리기간 산정)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

-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

※ 참고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제11판」 (지자체용),
보건복지부 보도자료('22.2.25.)

[상세 설명]

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

-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(출근)를 중지하고 격리

☞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

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

-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(수동 감시),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(출근)를 중지하고 자가격리

☞ 접촉자 분류 직후 및 격리·감시 해제 전(6~7일차)에 PCR 검사

※ 수동감시 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,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

※ 본인이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에 격리해제

※ 수동감시 중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~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

③ 본인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('22.3.14 이후부터 적용)

- 접종력과 관계없이 등교 가능(수동감시)

☞ 3일 이내 PCR 1회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(PCR 검사결과 확인까지 등교 중지 권고)

※ (3월13일까지)동거인 확진시 본인이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수동감시자로 등교 가능하나,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 중지

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

-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(출근)가 가능 ☞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